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2. .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9. 27. 김용태 의원 등 14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9. 30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11차 전체회의(2024.11.19.) : 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
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420회 국회(임시회)

제2차 법안심사소위(2024.12.23.) : 상정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소위(2025.2.6.) : 상정 · 축조심사 ·
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422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전체회의(2025.2.18.) : 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
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김용태 의원)

최근 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,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%에서 2%로 인하했음.

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%에서 5%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2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천우정)

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%에서 5%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제30조(연체금) ① (생략)	제30조(연체금) ①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(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 ----- ----- ----- 5 -----.

최근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의 총 한도 상한을 낮춰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임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고, 대학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취지로 보임.

다만,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학자금대출 연체금 한도를 하향하는 경우, 줄어든 한도만큼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있는바,

< 한국장학재단 손실보전금¹⁾ 현황 >

(단위: 백만원, 명, 2024년 5월말 기준)

구분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	금액	5,149	8,229	11,862	27,489	27,315
	인원	855	1,550	2,218	4,778	5,080

자료: 한국장학재단

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, 한국장학재단채의 추가 발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,300만원, 연평균 900만원 수준으로 추산²⁾하고 있음.

1) 사망, 개인회생,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원금 채권 손실 확정(상각)금에 대한 손실 보전

2) 연체(가산)금 신규분은 매년 4.1억원 정도 규모로 2025년~2029년 5년간 총 20.5억원으로 추계 됨.

<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연체(가산)금 감소액 추정 : 2025~2029년 >

(단위: 백만원)

	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현행 제도 (9%)	연체(가산)금	8,060	8,978	9,896	10,810	11,726	12,642
	신규분(A)		918	918	914	916	916
개정안 시행후 (5%)	연체(가산)금	4,405	4,913	5,422	5,928	6,435	6,942
	신규분(B)		508	509	506	507	507
차이(A-B)			410	409	408	409	409

* 국세청에서 제출한 ‘2019~2023년 연도별 현행 제도하 실적치를 기반으로 24년 이후는 최근 3개년 가중 평균(최근 1년 50%, 2년 30%, 3년 20%)하여 예상치 산출

자료: 한국장학재단

< 개정안 시행에 따른 향후 5년간 추가 재정 소요액 추계 >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대납 이자 증가분	8	8	9	9	9	43	9

* 연체금 총한도 비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감소되는 신규 연체(가산)금만큼 한국장학재단채 발행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뒤 이때의 이자 비용 지원 증가액을 추계함

* 현행과 개정안 시행 후의 차이 금액에 조달금리(3.57%) 및 평잔화 계수(58.3%) 등을 감안하여 산출

자료: 한국장학재단

교육부는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,

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대책('24.1.4.)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³⁾을 통해 연체금(고지금액의 3%→2%)과 가산금(매월 고지금액의 1.2%→0.5%) 한도를 하향한 바 있고,

대학생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미납된 학자금대출 원리금 한도를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고, 이는 ICL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임.

3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0조(연체금)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(원천공제 의무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대출원리금을 제23조제5항, 제27조제4항, 제28조제4항,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(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.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」 제33조(연체금)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100분의 2를 말한다. <개정 2024. 6. 25.>

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”이란 1천분의 5를 말한다.

참고로 관계부처인 국세청 또한 개정안에 이의가 없으며,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2019년도에 연체금 부과 한도를 축소(9%→5%)⁴⁾한 바 있음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문정복)

정을호 의원,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,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

4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0조(연체금)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

1.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: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. 이 경우 연체금(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)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.